

---

# 입 법 정 보

---

2019-18호

섬기는 일하는 가까운  
강원도의회

의회 사무처  
(수석전문위원실)



# 목 차



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4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6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6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6
5.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7
6.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7
7.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8
8.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소방청)	8
9.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9
10. 보안업무규정 전부개정령(안) (국가정보원).....	9
11.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10
12.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10
13.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1
14.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12
15.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13
16.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개정령(안) (인사혁신처).....	13
1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4
18.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15
19.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	16
20.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6
2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	17
22. 어촌·어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18
23. 어촌·어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19
24.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위원회).....	20
25. 아이돌봄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여성가족부).....	21
26.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21
27.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22
2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22
29.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여성가족부).....	23
3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	23
3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24
32.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행정안전부).....	24

33.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26
34.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여성가족부).....	26
35.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여성가족부).....	27
36.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27
37. 국민 제안 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27
38. 공무원 제안 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30
39.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원자력안전위원회).....	32
40.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33
41.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33
42.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33
43.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35
4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소벤처기업부)·	35
4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중소벤처기업부)·	36
46.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부).....	36

# 정부입법 예고

## 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9. 9. 16.
  - 마감일자 : 2019. 10. 28.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19.11.28. 시행)에 따라 도시재생 혁신지구, 도시재생사업 인정제도, 총괄관리자 제도 등이 새롭게 도입됨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다음의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첫째, 도시재생 혁신지구 재생사업의 시행을 위한 지구계획·시행계획의 세부사항, 사업시행자, 보호대상 이주민의 범위, 개발이익 산정방법, 국가시범지구 요건 등을 새롭게 정하려는 것임. 둘째, 도시재생사업 인정제도의 도입에 따라 인정제도의 절차, 인정기준 등을 하위법령에서 정하려는 것임. 셋째, 총괄사업관리자 제도의 도입에 따라 대통령령 위임사항인 총괄사업관리자가 될 수 있는 공공기관을 지정하고, 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범위를 정하려는 것임. 넷째, 그 밖에 국·공유재산 특례확대 등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도입에 따라 대통령령 위임사항인 국·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범위 등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혁신지구계획에 관한 사항) 종전 지구단위계획 등을 혁신지구 재생사업에 그대로 적용하려는 경우 혁신지구계획을 생략 가능하게 하고, 혁신지구계획에 포함할 수 있는 종전 개발사업은 법 49조에 따라 인허가 의제가 예정된 13개 개발사업으로 규정함 (안 제45조)
  - 나. (혁신지구 사업시행자) 혁신지구사업의 시행이 가능한 공공기관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7개 기관을 규정함 (안 제46조)
  - 다. (혁신지구재생사업의 건축물 등 사용 및 처분) 소유재산이 철거되는 경우 해당 소유자에게 신규 건축물 등을 우선공급하되, 지방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공급가격을 주변시세 이하로 할인 공

급함 (안 제51조)

- 라. (혁신지구재생사업의 개발이익 재투자) 개발이익 개념 및 산정방식을 정하고, 개발이익의 재투자범위는 지방위원회 심의로 결정하도록 함 (안 제54조)
- 마. (국가지범지구의 지정 등) 빈집밀집지역, 정비사업 해제구역, 상권쇠퇴지역, 노후철도, 노후산단 및 공업지역, 노후건축물 밀집국공유지 등 국가가 선도적으로 추진할 파급효과가 큰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지범지구에 대해서는 입지규제최소구역 수립기준 및 면적 특례를 적용하여 복합화 요건 2개 이상으로 완화, 입소구역 지역총량제에 국가지범지구 포함 면적은 미포함, 주거기능을 계획할 경우 주거연면적을 총연면적의 80퍼센트 이하로 계획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5조)
- 바. (도시재생 인정사업의 인정절차 및 기준) 인정사업의 대상으로 긴급정비사업, 소규모 사업, 생활SOC 공급사업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전략계획수립권자가 인정사업 계획서 작성 후 지방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하도록 하되, 전략계획의 권역별 전략계획 부합 여부, 부족기초생활인프라 포함 여부, 사업면적이 10만㎡ 미만 여부를 검토하도록 함 (안 제32조의 2)
- 사. (도시재생 총괄사업관리자 지정 및 업무범위 규정) 총괄사업관리자로 공공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지정하고, 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로 도시재생사업 시행자 지정시 적합성 분석, 신규 도시재생사업의 발굴 및 제안 등을 포함하게 함 (안 제32조의 3)
- 아. (도시재생사업에 노후 물류단지사업 포함)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사업 및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사업을 도시재생사업 대상에 포함함 (안 제2조)
- 자. (공동이용시설의 범위 확대) 사회적 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지역공동체가 운영하고 발생수익을 지역에 재투자하는 시설 등을 도시재생 기반시설에 포함함 (안 제3조)
- 차. (국유재산·공유재산의 사용료 감면) 국·공유재산의 임대비용을 재산가액의 1퍼센트로 감면하되,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인정하는 경우 무상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함 (안 제37조)











○ 주요내용

- 가. 지방기능경기대회 참가 연령을 14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는 규정 삭제

### 13.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9. 9. 19.                      • 마감일자 : 2019. 10. 29.
- 영유아보육법 제17조 및 제24조의2 개정에 따라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 및 근무시간을 규정하고, 기본보육과 연장보육 시간 및 운영 기준을 신설하여 어린이집의 운영을 지원하는 등 보육지원체계개편에 따른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며 영유아 건강검진 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공단에서 실시하는 영유아건강검진을 원장이 확인한 경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보육시설에서 매년 실시하도록 하는 영유아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갈음하고자 함. 또한 표준보육비용 조사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영유아보육법」 제34조제8항이 개정(법률 제16251호, 2019. 1. 15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여 표준보육비용의 정의, 범위 등을 명문화하고, 표준보육비용 계측 계획 수립 및 조사, 결과 발표 시기를 규정하여 표준보육비용 조사·결정 절차를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어린이집 영유아 급식 제공을 어린이집에서 직접 조리하여 제공하도록 하고 있어 현장학습 등 야외활동 시 어린이집에서 직접 조리한 식품의 제공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부모 또는 외부 급식 전문 업체 등의 도시락 이용도 불가능하여 현장학습 등의 취소 상황도 발생함에 따라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어린이집 운영기준과 내용 개정(안 제23조)
    - 1) 제목을 어린이집 운영기준과 내용으로 변경하고 보육시간 운영기준과 내용을 별표 8과 같이 함
  - 나. 시간연장형 보육의 명칭 변경(안 제28조)
    - 1) 시간연장형 보육을 기타 연장 보육으로 변경

다. 영유아 건강진단 시기 단서조항 명시(안 제33조제1항)

- 1)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해당 월령에 맞는 영유아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원장이 확인한 경우 영유아 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명시

라. 표준보육비용의 정의 및 조사범위 규정(안 제35조제1항)

- 1) 표준보육비용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 1인을 보육하는데 드는 적정비용으로 보육교직원 인건비, 급·간식비, 교재·교구비, 시설설비비, 관리운영비를 포함하여 조사하도록 규정

마. 표준보육비용의 조사 계획 수립, 조사 및 발표 시기 관련 사항 규정(안 제35조제2항)

- 1) 표준보육비용의 조사 전년도 12월까지 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조사 연도 12월까지 조사를 완료하여, 그 결과는 다음 해 3월까지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발표하고자 함

바. 별표 개정(안 별표 2)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

- 1)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따른 연장보육반 교사 배치 기준 및 근무시간을 신설

사. (안 별표 8) 어린이집 운영 시간 및 등하원 시간 관리 규정

- 1) 기본보육시간과 연장보육시간 명시, 영유아의 등하원 시간을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운영
- 2) 어린이집 영유아에 대한 급식제공에 있어 현장학습 등으로 어린이 집에서 직접 조리하여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예외 규정 마련

아. (안 별표 8의2) 시간연장형 보육을 기타 연장 보육으로 변경

#### 14.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 예고일자 : 2019. 9. 19.
- 마감일자 : 2019. 10. 30.

- 장애등급제 폐지내용을 반영한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5270호, 2017. 12. 19. 공포, 2019. 7. 1. 시행)됨에 따라,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을 개정(대통령령 제30043호, '19. 8. 13)하였음. 이어서 기존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을 활용하고 있는 「국민체육진흥법」시행규칙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환수절차 진행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명예퇴직자를 재임용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환수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을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명예퇴직수당 지급일 명문화

- 1) 명예퇴직수당 지급일은 명예퇴직일로 하되, 퇴직일이 휴일 등인 경우 퇴직일 전날에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

나. 명예퇴직수당 환수를 위한 자료 요청

- 1) 다른 중앙행정기관에서 명예퇴직수당을 받고 퇴직한 국가공무원을 재임용하는 경우, 보다 엄정하고 신속한 명예퇴직수당 환수절차 진행을 위해 재임용한 중앙행정기관장이 수당을 지급한 중앙행정기관장에게 환수 절차를 위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다.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 조정

- 1)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 제2조제5호 부터 제13호까지의 검사를 명예퇴직수당 지급 제외 대상에서 삭제

## 1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9. 9. 20.
- 마감일자 : 2019. 10. 30.

- 응급의료 미수급의 대지급 청구시 첨부하는 ‘대지급청구서’와 ‘미납확인서’를 통합하여 제출서류 간소화 등 대지급 청구관련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지정기준 중 연간 진료실적기준을 삭제하며,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감염병 의심환자 선별, 감염병 격리시설 확보 등에 관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329호, 2016. 12. 2. 공포, 2018. 12. 3. 시행)됨에 따라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및 감염병 의심환자 선별 의무를 모든 응급의료기관으로 확대하고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에도 격리시설을 갖추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안전한 응급실 환경 조성을 위한 보안인력 배치를 명시함. 또한, 구급차의 운용·변경 신고 및 응급환자 이송업의 영업양도·양수시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관할 행정청이 ‘행



수학교를 추가하여 특수학교 자유학기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자유학기 ‘학기’ 지정 및 ‘수업운영 방법 등’ 대상을 중학교에  
서 “중학교 및 특수학교(중학교 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로 한함)”  
로, 특수학교를 추가하도록 함(안 제44조제3항, 제48조의2제1항)

19.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

- 예고일자 : 2019. 9. 20.
- 마감일자 : 2019. 10. 10.

○ 주요내용

가. 장애인 고용장려금 제도 개선(안 제30조 제5항)

- 1) 운영비 등을 정부 보조금으로 지원 받는 일부 시설 운영 법인이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법인 운용자금으로 활용하고, 소속 장애인  
의 열악한 임금수준 개선에는 미온적인 문제 발생. 이에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지급 받은 사업주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 및 사업수행에 드는 비용을 지원 받는 경우 고용장려금의  
사용용도를 장애인의 처우개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게 하고, 이를 위반 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고용장려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개정

20.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9. 9. 23.
- 마감일자 : 2019. 11. 4.

○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및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운영·관리함  
에 있어 기록·보존해야하는 자료를 전자적 방법으로도 기록·보존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빗물이용시설 관리자 등의 자료 기록·보존의무 제도개선(안 제4조)

- 1) “빗물사용량, 누수 및 정상가동 점검결과 등에 관한 자료를 기



## 22. 어촌·어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 예고일자 : 2019. 9. 23.
  - 마감일자 : 2019. 11. 4.
- 어촌·어항재생사업의 개념을 도입하고, 동 사업을 전담 지원하는 조직인 어촌·어항재생사업추진지원단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는 등 어촌·어항재생사업(어촌뉴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어촌·어항법」(법률 제16570호, 2019.8.27. 공포, 2020.2.28.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어촌·어항재생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항목 규정(안 제42조의3 신설)
      - 1) 어촌·어항재생개발계획에 따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하는 어촌·어항재생사업계획에 사업계획의 개요, 사업대상지 위치 등 일반현황, 세부개발계획 및 투자계획, 개발효과 등을 포함 하도록 규정
    - 나. 어촌·어항재생사업추진지원단으로 지정할 수 있는 공공기관 및 지정받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사항 규정(안 제42조의6 신설)
      - 1)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어촌어항공단, 국토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등을 어촌·어항재생사업추진지원단으로 지정할 수 있는 공공기관으로 규정
      - 2) 어촌·어항재생사업추진지원단으로 지정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사업수행 결과와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
    - 다. 어촌·어항재생지역협의체의 업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2조의7 및 안 제42조의8 신설)
      - 1) 법률에서 정한 협의체의 업무 외에 주민참여 활성화 및 지원업무, 어촌·어항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공동체 역량강화, 그 밖에 어촌·어항재생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로 규정
      - 2) 협의체는 2명의 공동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

성, 협의회는 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협의체 위원간 협의를 통해 개최 횟수 및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

라. 어촌·어항재생사업 시행자 규정(안 제42조의9 신설)

- 1)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 등 법률에서 정한 시행자 외에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도 어촌·어항재생사업의 시행자로 규정

## 23. 어촌·어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 예고일자 : 2019. 9. 23.
- 마감일자 : 2019. 11. 4.

○ 어촌·어항재생사업의 개념을 도입하고, 동 사업을 전담 지원하는 조직인 어촌·어항재생사업추진지원단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는 등 어촌·어항재생사업(어촌뉴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어촌·어항법」(법률 제16570호, 2019.8.27. 공포, 2020.2.28.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촌·어항재생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항목 규정(안 제42조의3 신설)

- 1) 어촌·어항재생개발계획에 따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하는 어촌·어항재생사업계획에 사업계획의 개요, 사업대상지 위치 등 일반현황, 세부개발계획 및 투자계획, 개발효과 등을 포함 하도록 규정

나. 어촌·어항재생사업추진지원단으로 지정할 수 있는 공공기관 및 지정받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사항 규정(안 제42조의6 신설)

- 1)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어촌어항공단, 국토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등을 어촌·어항재생사업추진지원단으로 지정할 수 있는 공공기관으로 규정
- 2) 어촌·어항재생사업추진지원단으로 지정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사업수행 결과와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

다. 어촌·어항재생지역협의체의 업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2조의7 및 안 제42조의8 신설)

- 1) 법률에서 정한 협의체의 업무 외에 주민참여 활성화 및 지원업무, 어촌·어항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공동체 역량강화, 그 밖에 어촌·어항재생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로 규정
- 2) 협의체는 2명의 공동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협의회는 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협의체 위원간 협의를 통해 개최 횟수 및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

라. 어촌·어항재생사업 시행자 규정(안 제42조의9 신설)

- 1)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 등 법률에서 정한 시행자 외에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도 어촌·어항재생사업의 시행자로 규정

## 24.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위원회)

- 예고일자 : 2019. 9. 23.
- 마감일자 : 2019. 11. 4.
-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운영 본격화에 따라 시설 운영과정 중의 평가와 의무에 관한 안전규제 체계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앞으로 발생할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그간 미흡했던 해체 폐쇄 단계의 규제절차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주기적 안전성평가 도입(안 제65조의2)
    - 1) IAEA 권고 및 국내외 사례를 고려하여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에 대한 10년 주기 안전성 평가근거를 마련함
    - 2)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의 주기적 안전성평가 도래 전 법률상 시행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자 의무를 명확화 함
  - 나.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의무 명확화(안 제68조, 제68조의2)
    - 1) 현행법은 시설 운영 중 사업자가 지켜야 할 각종 안전조치 의무를 타 시설과 달리 행위에 제한된 기준준수의무로 부과하고 있어, 방폐물 취급행위 외 시설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치의무기술



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운영 개선(안 제14조의3)

1)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해촉 사유에 재직경력을 추가하고, 이해관계 등에 관한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안전관리책임자에 관한 사무 처리 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 마련(안 제38조의2)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이 안전관리책임자의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27.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9. 9. 23.

• 마감일자 : 2019. 11. 4.

○ 우리나라에서 다자간 정상회의 개최 시 정상 등의 경호용등의 자동차에는 임시 경호용번호판을 부착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함으로써 국가별 행사용 자동차에 대한 의전·경호업무를 철저히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경호용등의 자동차에 경호용번호판을 부착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특례 근거, 절차 및 방법을 명시(안 제8조의9 신설)

1) 경호용등의 자동차에는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경호용번호판을 발급받아 부착하고, 경호용 번호판의 규격·발급·봉인, 운행기간 등에 대하여는 경호기관의 장이 국토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

2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 예고일자 : 2019. 9. 23.

• 마감일자 : 2019. 11. 4.

○ 난임치료휴가의 사전신청기한을 삭제하여 근로자가 보다 원활히 제도





관련되는 주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설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권한 및 사무·재원의 배분에 관한 사항, 균형발전과 관련된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지방재정 및 세제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 다. 구성 및 운영(제3조)

- 1) 대통령은 협력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와 지방자치법 제 181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시·도지사의 협의체의 장은 협력회의의 부의장이 되며,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등은 협력회의의 구성원이 됨
- 2) 회의는 의장이 소집하고 주재하며, 부의장은 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고 안건을 제안할 수 있으며 의장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직무를 대행함
- 3) 의장은 필요한 경우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공무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음

#### 라. 심의결과의 활용(제4조)

-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협력회의의 심의결과를 존중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심의결과에 따른 조치결과 및 이행계획을 협력회의에 보고하여야 함

#### 마. 관계부처 등에 대한 협조요청(제5조)

- 1) 협력회의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 의장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음

#### 바. 실무협의회(제6조)

- 1) 협력회의에 상정할 안건의 선정 및 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의장이 실무협의를 요구하는 사항을 조정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설치함
- 2) 행정안전부장관과 시·도지사협의회장이 지명하는 시·도지사 1인은 실무협의회의 공동의장이 되고, 기획재정부차관, 교육부차



○ 주요내용

가. 수련시설 운영 중 모험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한 경우 관할 지자체에 허가받도록 개선(안 제6 조)

나. 수련시설 종합안전·위생점검 대상에 모험시설 추가(안 제11조제3항 별표1의2)

**35.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여성가족부)**

● 예고일자 : 2019. 9. 25.

● 마감일자 : 2019. 11. 4.

○ 최근 수련시설 내 하강레포츠(집라인) 등 모험시설이 증가하고 있어 모험시설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설치 및 점검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모험시설 관리를 위한 설치 및 점검기준(고시)의 근거마련(안 제8 조제2항)

**36.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 예고일자 : 2019. 9. 25.

● 마감일자 : 2019. 10. 11.

○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위하여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교육공무원에 대하여 승진제한기간을 6개월 가산하도록 개정

○ 주요내용

가.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처분 집행이 끝난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승진임용 제한(안 제16조제1항2호)

**37. 국민 제안 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 예고일자 : 2019. 9. 26.

● 마감일자 : 2019. 11. 5.

○ 국민제안 제도운영 전반에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국민제안 재심사 및 자체우수제안 심사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외국인이 제출한 국민제안의 처리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그 간 국민제안 참여 불편한 사항 및 운영상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민제안을 제출할 수 있는 자의 범위 명확화(안 제5조)

- 1) 현행 “모든 국민”은 국민제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외국인이 제출한 제안의 접수·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불명확한 면이 있음. 따라서 “모든 국민(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로 개정하여 외국인의 국민제안 제출 및 처리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나. 국민제안 반려 절차 변경 및 반복 제안 종결처리 신설 등(안 제6조)

- 1) 국민제안을 반려하거나 민원으로 접수하여 처리해야 할 경우, 제안자에게 일정 기간을 주어 제안을 보완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2) 영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반려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7일 이내에 보완하여 다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동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을 경우 종결할 수 있도록 함.
- 3) 제출한 제안이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제안자에게 7일 이내에 제안을 보완하도록 하고, 동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을 경우 민원으로 접수하여 처리한다는 사실을 알리도록 함.
- 4) 동일한 제안을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한 기관에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제출한 경우 종결처리할 수 있도록 함.

다. 기관별 국민제안 심사위원회 구성(안 제8조)

- 1) 국민제안 제도운영 전반에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기관별 국민제안 심사위원회(이하 “기관별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경우 전체 구성 인원의 2분의 1이상을 국민으로 구성하도록 함.
- 2) 국민제안의 재심사 채택심사 또는 자체우수제안 결정 시 반드시 기관별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라. 공모제안 운영관리사항 구체적 명시 (안 제10조)

- 1) 현행은 공모제안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 절차를 규정하지 않아 공모제안 결과를 공지하지 않는 등 문제점이 있음. 제안 공모시 공모기간, 공모결과 발표 일자, 장소 등을 알리고, 공모 기간연장, 결과발표 지연 또는 당선작이 없는 경우에도 그 사실을 알리도록 함.

마. 불채택제안 재심사 요청 현실화 (안 제12조)

- 1) 현행 제안이 채택되지 않은 경우, 제안자는 통지받은 날로 15일 이내에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으나 이후 시간이 경과하여 행정환경의 변화등에 따라 제안이 실시된 경우 제안자가 재심사를 요청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
- 2) 제안자가 불채택 제안이 실시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해당 행정기관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기관은 재심사 실시결과 제안한 내용이 실시한 정책과 다르거나 그 밖의 사유로 채택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제안자에게 통보하도록 함.

바. 개인정보 허위기재자의 채택제안의 시상 (안 제18조)

- 1) 제안자가 개인정보를 허위로 기재하여 포상 또는 부상지급 사실을 알릴 수 없는 경우 채택제안에 대한 시상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사. 국민제안 실시에 공로가 있는 공무원 인사상 우대조치 신설(안 제20조)

- 1) 국민제안 실시에 직접적인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적극행정 운영규정」 또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하여 인사상 우대조치를 하도록 함.

아. 국민제안 운영에 대한 확인·점검 강화(안 제24조)

- 1) 행정기관의 장은 매분기 1회 이상 국민제안 처리상황과 운영실태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처리가 미흡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 2)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하 “국민신문고”) 운영을 총괄하는 행정기관에서는 매분기마다 국민신문고에서 처리된 국민제안 자료를 분석하여 각 행정기관 및 행정안전부에 통보하도록 함.

차. 국민제안제도 제도개선 등을 위한 정보의 활용(안 제26조)

- 1) 행정안전부는 국민제안제도 운영을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확인·점검, 분석·평가를 통하여 제도개선을 하기 위하여 다른 행정기관이 접수한 국민제안 정보를 열람 할

필요가 있음.

- 2) 다른 행정기관이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한 국민 제안의 제목, 내용, 제안자, 접수 일시, 채택 및 시상 여부 등 국민 제안 관련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함.

### 38. 공무원 제안 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 예고일자 : 2019. 9. 26.
- 마감일자 : 2019. 11. 5.
- 현행 공무원제안은 국가공무원이 중앙행정기관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에도 공무원제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의 공무원제안 운영상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공무원제안 제출·처리 행정기관 확대(안 제2조)
    - 1) 현행 공무원제안은 국가공무원이 중앙행정기관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국가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 소관 제안을 제출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
    - 2) 국가공무원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소관 제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공무원제안을 활성화 하고자 함.
  - 나. 공무원제안 반려 폐지 및 반복 제안 종결처리 신설 등(안 제6조)
    - 1) 영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반려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7일 이내에 보완하여 다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동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을 경우 종결처리할 수 있도록 함.
    - 2) 동일한 제안을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한 기관에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제출한 경우 종결처리할 수 있도록 함.
  - 다. 공모제안 운영에 대한 관리사항 구체적 명시(안 제9조)
    - 1) 현행은 공모제안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 절차를 규정하지 않아 공모제안 결과를 공지하지 않는 등 문제점이 있음. 제안 공모시 공모기간, 공모결과 발표 일자, 장소 등을 알리고, 공모기간연장, 결과발표 지연 또는 당선작이 없는 경우에도 그 사실을 알리도록 함.

라. 불채택 제안의 재심사 요청 현실화 (안 제13조)

- 1) 현행 제안이 채택되지 않은 경우, 제안자는 통지받은 날로 15일 이내에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으나 이후 시간이 경과하여 행정환경의 변화등에 따라 제안이 실시된 경우 제안자가 재심사를 요청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
- 2) 제안자가 불채택 제안이 실시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해당 행정기관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기관은 재심사 실시결과 제안한 내용이 실시한 정책과 다르거나 그 밖의 사유로 채택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제안자에게 통보하도록 함.

마. 지방공무원의 인사특전 부여 요청 확대(안 제18조)

-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제안이 채택·시행되어 행정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는 제안자가 소속공무원이 아닌 경우, 제안자가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인사상 특전 부여를 요청할 수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소속된 지방공무원은 해당되지 않아 형평성이 맞지 않음.
- 2) 영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방공무원이 국가 행정사무에 관한 제안을 제출한 경우, 제안자가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에게도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바. 공무원제안의 실시예 공로가 있는 공무원 인사상 우대(안 제21조)

- 1) 채택제안의 실시예 직접적인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채택제안의 실시를 활성화하기 위해 인사상 우대조치를 확대하고자 함
- 2) 채택제안의 실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안을 실시하는 공무원에게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하여 인사상 우대조치를 하도록 하되, 동일한 제안으로 이미 인사상 특전을 부여받은 경우는 제외하도록 함

사. 공무원제안 운영에 대한 확인·점검 강화(안 제25조)

- 1) 행정기관의 장은 매분기 1회 이상 공무원제안 처리상황과 운영실태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처리가 미흡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 2)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하 “국민신문고”) 운영 총괄 기관에서는 매분기 국민신문고에서 처리된 공무원제안 자료를 분석하여 각 행정기관 및 행정안전부에 통보하도록 함.

아. 공무원제안 제도개선 등을 위한 정보의 활용(안 제27조)

- 1)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제안 규정의 운영을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확인·점검, 분석·평가를 통하여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하여 다른 행정기관이 접수한 공무원제안 정보를 열람할 필요가 있음.
- 2) 다른 행정기관이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한 공무원제안의 제목, 내용, 제안자, 접수 일시, 채택 및 시상 여부 등 공무원제안 관련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함.

### 39.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원자력안전위원회)

- 예고일자 : 2019. 9. 26.
- 마감일자 : 2019. 11. 5.

- 고리 1호기 해체계획서 제출을 계기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대상 지자체역할과 관련하여 지자체의 자율성 및 행정력 등을 고려한 재정립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관련 절차를 개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주민의견 수렴 등을 위한 주관 지자체 폐지 (안 제143조 등)

- 1)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대상 지역내 다수의 지자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면적이 넓은 지자체가 주관하던 현행 규정에서 ‘주관’을 삭제
- 2) 주민의견 수렴 대상 지역내 모든 지자체가 관할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고 공청회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역할 강화

나. 광역시장·도지사의 역할 부여 (신설)

- 1) 지자체가 주민의견 수렴 절차 등을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관할 광역시장·도지사가 이를 대신하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역할 부여



공건축지원센터 설치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5994호, 2018. 12. 18. 공포, 2019. 12. 19.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역량있는 건축사 인정범위 확대, 설계공모 의뢰기관 규정, 건축설계 분리발주 규정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역량있는 건축사’ 인정대상 확대(안 제11조)

- 1) 설계공모 입상실적뿐만 아니라,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정부가 주최한 시상식에서 건축 작품에 대한 수상실적을 인정

나. 건축설계 분리발주(안 제17조제2항)

- 1) 설계공모 우선적용 대상 건축물의 설계를 다른 건설공사의 설계에 포함시켜 설계공모가 아닌 방식으로 발주하는 것을 금지

다. 설계공모 업무 의뢰(안 제17조제4항)

- 1) 공공기관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건축지원센터 및 법 제24조의2에 따른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등에 설계공모 업무를 의뢰할 수 있음

라. 건축기획 업무내용(안 제19조의2)

- 1) 법률에서 규정한 업무내용 외에 추가적으로 공공기관이 건축기획 업무 시 포함해야 할 사항을 규정

마. 건설공사 시행과정 수행 인정(안 제19조의3)

- 1)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할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46조에 따른 ‘기본구상’, ‘공사수행방식 결정’ 수행을 인정

바. 건축기획 심의대상(안 제19조의4)

- 1) 설계비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 사업 및 공공기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업을 건축기획 심의대상으로 규정

사. 건축기획 업무 의뢰대상(안 제19조의5)

- 1) 건축기획 업무 수행을 건축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위촉한 민간전문가 및 제11조에 의한 ‘역량있는 건축사’에 의뢰 가능토록 규정



